○○○씨장학회 정관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본 회의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국내외의 정규대학, 대학원생, 고교 재학생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자 또는 경제적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씨 후손 남녀로 한다.

제 3 조(장학생의 수)

장학생의 수는 본 회의 기금 이자의 예산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조(장학금의 지급)

장학생 1인당 당해 학기 등록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정으로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장학금의 지급기간)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그러나 제12조에 의거 장학금 지급기간이 연장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제14조 각 항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행한 학기까지로 한다.

제 6 조(장학생의 신청방법)

제2조 해당자로서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본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7 조(장학생의 추천 기준)

1.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학업성적은 학기 평점 3.0 이상 해당자, 또는 학급석차 20% 이내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심신이 강건한 자
3. 신입생은 입학성적(수능점수)이 우수한 자

제 8 조(장학금 신청 절차)

장학생으로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 이사장에게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선발 신청서 1통
2. 재학 증명서 또는 합격증 1통
3. 성적 증명서 1통
4. 과세증명서 1통
5. 호적등본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7. 각 파 대표자 또는 본회 이사 추천서 1통
8. 사진 1통
9. 서약서 1통

제 9 조(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매학기 별로 선발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생 선발기준)

장학생의 선발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평무사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지급 방법)

장학금은 년 2회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단, 장학금 지급통보를 받은 자는 인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금의 계속지급)

동일 학생으로서 계속 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1부를 이사장이 정한 기한 내에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장학생 신상 이동보고)

장학생이 전교, 휴학, 군 입대, 퇴학 기타 신분상 이동이 있을 때에는 본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장학금의 지급중지)

장학생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학기별 성적이 제 7조 제2항에 미달된 자
2. 제12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 해당자 및 군 입대 등 기타 사정으로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제15조(시행규칙의 개정)

본회 규칙은 본회의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6조(시 행)

1. 본 규정은 1985년 총회 시에 공포하고 1986년도 신학기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은 1992년 10월 10일 개정 날로부터 시행한다.